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규정(안 제12조)
 -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
 -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, 대회 및 사업 지원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- 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(이하”를 “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라 함은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장 기타”를 “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란 자전거도로, 자전거주차장과 그 밖에”로, “영 제2조”를 “영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자전거주차장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자전거주차장”이란”으로, “자전거의주차”를 “자전거의 주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자전거정비소”라 함은”을 ““자전거정비소”란”으로, “또는유상”을 “또는 유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시민자전거”라 함은 구미시”를 ““시민자전거”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, “수있는 구미시”를 “수 있는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자전거전용도로”라 함은”을 ““자전거전용도로”란”으로, “분리대·연석(緣石)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”를 “분리대, 연석(緣石)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

““자전거대여소”라 함은”을 ““자전거대여소”란”으로, “자에게 자전거를 무상또는 유상”을 “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한다)라 함은”을 “한다)란”으로, “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 규정에 의해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등록”을 “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에 등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“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”이라 함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”을 ““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”이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,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정비계획(이하“정비계획””을 “정비계획(이하 “정비계획”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있어「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있어 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”을 “위하여”로, “안에서”를 “안에서 보조금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
2.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·국외 행사, 대회 및 사업 지원

제12조제3항 중 “민간단체“를 “민간단체 등“으로, “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”을 “사용을 승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5호 중 “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·훼손자는”을 “시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지정·운영할수”를 “지정·운영할 수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수료한 자”를 “수료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1조제2호 중 “제20조 제3항제1호”를 “제20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회의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「구미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,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라 함은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장 기 타 자전거(원동기를 장치한 것,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 다. 이하 같다)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제2조의 규 정을 적용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-----. 1. 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란 자전 거도로, 자전거주차장과 그 밖 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영 제2조----- -----.
2. “자전거주차장”이라 함은 자 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 전거의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 다.	2. “자전거주차장”이란----- ----- 자 전거의 주차----- ----- -----.

3. “자전거정비소”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.

4. “시민자전거”라 함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.

5. “자전거전용도로”라 함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·연석(緣石)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.

6. “자전거편의시설”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, 자전거횡단보도턱 정비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말한다.

7. “자전거대여소”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
8. “자전거이용민간단체”(이하 “민간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자

3. “자전거정비소”란----- --

----- 또는 유상-----

-----.

4. “시민자전거”란 구미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
----- 수 있는 시----- --

--.

5. “자전거전용도로”란-----

분리대, 연석(緣石) 및 그 밖
에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---

-----.

<삭 제>

7. “자전거대여소”란----- --
----- 사람에게 자전거
를 무상 또는 유상-----
-----.

8. -----
----- 한다)란-----

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
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
업으로 하면서 「비영리 민간
단체지원법」 제4조 규정에 의
해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
에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9. “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”이
라 함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
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
한다.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책무) 모든
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
무를 진다.

1. ~ 3. (생략)

제5조(정비계획의 수립) ① 시장
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
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(이하
“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
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
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개선기준의 설정) 시장은
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
어 「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·
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
른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

----- 「비영리
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 규정
에 따라 시에 등록-----
-----.

9. “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”이
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,-----
-----.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책무) -----
----- 각 호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정비계획의 수립) ① -----
----- 정비계획
(이하 “정비계획”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개선기준의 설정) -----
----- 있
어 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
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-----

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
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)
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
설치기준은 「자전거이용 시설
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
칙」에 따른다.

제12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자전
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
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
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
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
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
수 있다.

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
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
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
지원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3조(시민자전거의 운영) ①

-----.
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)

----- 「자전거 이용시설
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
칙」-----.

제12조(재정지원) ① -----
----- 위하여---

---- 안에서 보조금을 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
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
체의 육성 및 지원

2.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민
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
· 국외 행사, 대회 및 사업 지
원

③ 민간단체 등-----
----- 사용
을 승인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시민자전거의 운영) ①

(생 략)

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~ 4. (생 략)

5.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
· 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.

6. (생 략)

③ (생 략)

제14조(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6조(자전거타기의 교육 등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.

③·④ (생 략)

제1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을 수행한다.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시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은 -----.

6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-----

지정·운영할 수 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자전거타기의 교육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라
----- 수료
한 사람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기능) ----- 각 호

-.

1. ~ 4. (생략)

제20조(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. <후단 신설>

1. ~ 4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20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

3. (생략)

제22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.

②·③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해당하는 사람 -----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0조제3항제1호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
----- 위
원회의 회의를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
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구미
시각중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
범위 안에서수당·여비 등의 실
비를 지급할수 있으며, 공무원
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
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.

<신 설>

제26조 (생 략)

제24조(수당 등) -----
----- 「구미
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--

-----.
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
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
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구
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
다.

제27조 (현행 제26조와 같음)

관 련 법 령

□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소과 실·과		녹색정책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이 대 희
	담 당	김 영 길
	담 당 자	백 화 숙 (480-6572)